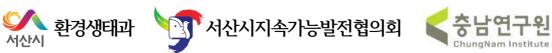
2017 서산시지속가능발전정책 워크숍·토론회

● 일 시: 2017. 11. 23(목). 18:30 ~ 20:30

장소: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4층







지속가능발전과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워크숍

1 목적

- 서산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기회 부여
-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 중 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과 관련, 서산시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및 갈등해소 방안 마련
- 지역주민의 공공갈등 현안문제 해결의 능력 향상 및 지식공유

② 내용

- 공공갈등 전문가 주제발표
- 토론을 통한 제도마련 방안 논의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③ 행사개요

○ 일 시 : 2017. 11. 23.(목), 18:30 ~ 20:30

O 장 소 :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실

○ 참석 대상 : 약 100명(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

○ 주최·주관 :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남연구원

④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8:30~18:3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8:35~19:05	30'	주제발표서산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정 종 관 (충남연구원)
19:05~20:05	60'	지정토론 - 좌장 : 신기원(신성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박강우(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김태연((주)웨스트 대표이사) 임정래(서사신 지곡면) 이한태(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위원) 김기필(서산시 자원시설팀장)	
20:05~20:30	30'	· 자율토론 - 발제 및 토론 내용 질의응답	
20:30		∘ 폐 회	

||||||| 목 차 ||||||||

I. 서산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II. 서산지역 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향후 대응 ·········· 21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박상우 소장
Ⅲ. 바이오 드라잉을 활용한 생활폐기물 활용방안 ····· 28 ㈜웨스트 김태연 대표이사
IV. 폐기물은 사업이 아니다 34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임정래
V. 서산시폐기물(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 문제점 ······ 46 서산시 최호웅
VI. 법령에 규정된 서산시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Ⅷ.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방안 ······· 82 서산시자원순환과 김기필 자원시설팀장

서산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 충남연구원 정종관 선임연구위원

2017. 11. 23

지속가능발전 정책워크샵 III

서산지역 생활폐기물처리 현황 및 방안

정종 관



내용순서

- 1. 여건변화와전망
- 2. 자원순환형 사회 만들기
- 3.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전략
- 4. 폐기물처리 갈등관리 사례분석

여건변화와 전망

○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 10년 단위 중장기계획(2012-21년) 수립과 집행으로 폐기물 처리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권역별 광역화 추진에 따른 협의와 중재 기능 강화

○ 유기성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로 국가 규제 강화

- 음식물류 해양배출금지(2013년 시행)에 따른 처리시설 규제 및 관리강화
-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음식물 및 음폐수의 혼합처리로 에너지화 방안 적극 추진(국비 확보계획 반영)

○ 자원순환 세부 시행계획 마련 후 부문별 집행 추진

- 산단지역 자원순환단지는 경제,환경,사회적 타당성 검토 후 고려
- 생활 속에 실천을 전제로 한 도민의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인식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폐기물처리의 광역화평가

기초자치단체 입장

- 당초 재정사업에서 시설용량 확장과 함께 광역화
- 국비지원의 어려움 때문에 민자로 전환 추진
- 늦더라도 국비확보를 전제로 광역화해야 함
-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통해 순환형 매립장을 조성, 광역화의 연차적 시행은 어려우므로 계획단계에서부 터 통합화 추진

(국비 받아 한꺼번에 추진하고 사업기간 2년 고려)

- 수용가능시설로 우선 이송처리하고 단계적 광역화

지자체의 청소업무평가

O 청소시스템 변화 방향

생활폐기물 청소서비스 공급과정에서 민간위탁. 민영화하더라도 세부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설계과정에서는 시장내의 또 다른 서비스공급자로서 표준원가를 산정·제시.
 청소서비스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과 청소서비스의 질을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〇 음식물류 처리방향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는 대체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재정적인 부담 경감 방향 추진

지자체의 청소업무평가

O 작영과 민간위탁 등 청소시스템 결정

청소시스템의 효율성과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관심도, 청소예산의 부족, 청소차량의 노후화, 환경미화원의 고령화 등 지역여건 등의 SWOT분석 결과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을 바탕으로 해야 함.

O 직영과 민간위탁 혼합 청소시스템

시장·군수가 구역을 분할하는 다중계약방식을 취하는 경우, 기존의 허가업체들은 자기 구역내에서 독점적 지위가 있고, 시군에서 기존업체를 교체하고자 해도 현실적으로 위탁할 업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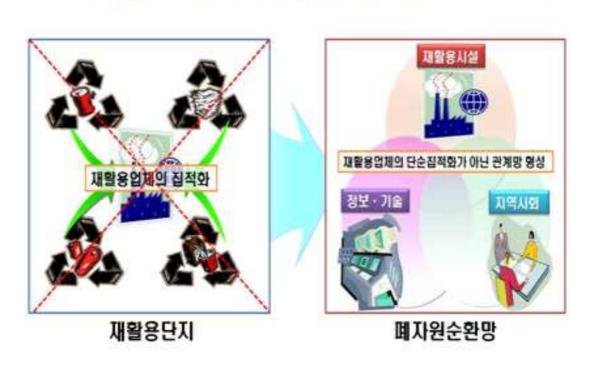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의 전부 위탁은 정부독점에서 민간독점으로의 수평이동만 초래해 비효율성(청소서비스 질의 저하 및 위탁비용 증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합계약 방식이 증가하고 있음.

6

자원순환형 사회 만들기



재활용단지와 폐자원순환망 비교



지역연계형 생태산업단지 추진

- -자원순환특화단지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에 의한 특수한 성격과 형태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비용을 분담하여 업체들의 임대부지와 공동물류시설, 폐수처리시설, 관리동 등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지칭
-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주요 유치업종으로 국책 기술개발사업
- 자원순환특화단지를 (가칭)지역연계형 생태산업단지 개발 필요

자원순환기본법시행

- 2018년 1월 1일

폐기물 자원순환단지화



10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전략

① 지역특화 에너지 회수

지역의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로 한 자원순환 비즈니스 모 델 창출

② 자원화 단지조성

재활용 업체들이 입주하여 집 적효과가 있는 단지조성 (폐기물 소각,전처리시설 등)

③ 지역협의체 구성

시군, 재활용업체,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④ 운영.지원체계

올바로시스템, 자원순환정보시 스템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기능 수행

11

3대 전략

세부 정책과제

자원순환의 기반구축

- □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2012-21) 수립과 시행
- 미 폐기물의 효율적 자원화방안 추진
- □ 산단지역 자원순환단지 타당성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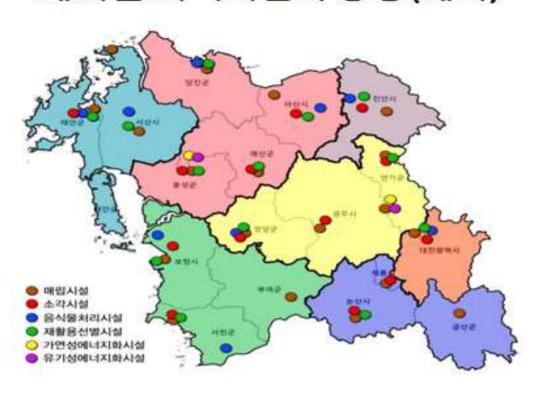
처리시설 운영의 효율화

- 미 폐기를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안전 강화
- 미 영농폐기물의 처리효율 향상(폐농자재, 농약병)
-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추진(규제 강화대비)

생활 속의 실천

- □ 도민 생활공감 정책 강화(폐가전, 휴대폰 등)
-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대비 감량화 교육
- 미 재활용품 분리수가 활성화로 순환성 제고

폐기물 최적화관리 방향(예시)



자원순환형 사회의 갈등관리 방향

사전갈등 영향분석	◇ 정책추진 전 갈등 요인 분석 등 갈등방지 대책 제시 - 이해관계, 쟁점, 합의형성절차, 핵심당사자 참여문제 등 → 주요시책 수립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 전문가 참여, 중립적인 자문역할 수행 - 시책추진 방향, 갈등의 원인, 해결방향 등 → 위원회 자문 결과의 정책 반영 권고
갈등조정회의 (권역별포럼)	◇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자간 참여 조정협의체 운영 - 정보공개, 토론, 조정안제시 등 쟁점사항 해결 조정 → 자치단체간 협력지원체제 강화로 해결방안 모색
공공정책 수정,보완	◇ 제시된 대안 등을 검토, 정책 수정 보완 등 실시 - 정책적, 제도적 변경 등 우호적 환경 조성 ,갈등 해소 → 효율적 갈등방지 및 해결체계 마련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16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17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15 9 2

14章曹

- 工工 100 MM SE MERCHENDER NAME #10 MM STAND THE MES #1000 # 2 MM MM MESSE NEWS MESSES, E 480 MM MYSHADE ARTHCOTECH MESS NEWS MESSES #4 1 PE 40 MM MYSHADE TOWN THE MESS MESS MESS
- 본 지원으로 단안 환경영향 유인을 강합되었고 교육된 경우, 이상이랍니고 단한 고급적인 유인 도 있는 단門 지원이렇으로 전혀서 같아. 이 건경설에 가능으로 전한 이건병이 만든 그룹으로 한 번호, 하시어 보이들을 갖게 하므로 경쟁 이 확인을 예약에 따른 처음 전 하인간이 만든. 문급한 병병 요수 있는 문입이는 방법이 생각되.
- 이라서, 참가에 값과 비밀었던 환경소크로 보고를 하여 가면 환경에 가장 발발이 없고도 해가 되면 없어서 어쩌지도 것 같습니 한지, 여성성으로 및 지상임인환한 있어, 여러시간 있어 그 화장이고로로 여러한 호험이 이라 본 이라면 건강을 제공하지도 기업으로 되면 이어를 있어 보면 지도 하는 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하는 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 없다.



- 17 -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오토밸리산업페기물매립장 피해 없게할것"

서산시장, 반대 주민 설득 비대위, 안전성 확보 요구

[서산]이완성 서신시장이 시청 앞 에서 메일 오토빨리산업메기를 매립 장조성 반대 집회를 하는 주민들에게 임집들 가였다.

이 시장은 서신시의회 제228회 인시 회 시정 정문 마지막 날인 20일 오루벨 리산업폐기를 예립장 조성과 관련한 보 층 설명을 자처, "반대 집회를 하는 주 민들도 시장이 할 수 없는 컵 알고 있 다. 반대 집회를 하려면 시청이 아닌 도 참에서 하는 게 맞다"며 이렇이 말했 다. 이 시장은 이어 "오토벨리산업폐기 물 예립장 조성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만타까운 일이지만 백지하는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도점에 가서 도지사에게 백 지화를 요구하다"고 신경을 밝혔다

이 사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업구역인 '오토뱅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서는 "우리 담당적원이 금강유역환경 참 성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인 근지역이 통상 2~3km라는 얘기를 들 었다"며 "이를 변화하게 하기 위해 당 당자들을 급강유역환경형에 보내 당 번을 요구했고, 공문으로도 문서 답변 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은 오지 않 고 있다"고 성명했다.

또 하가 매립기간인 18년 8개월에 대해서도 매립용량이 차면 하가 기간 과 상관없이 끝난다고 덧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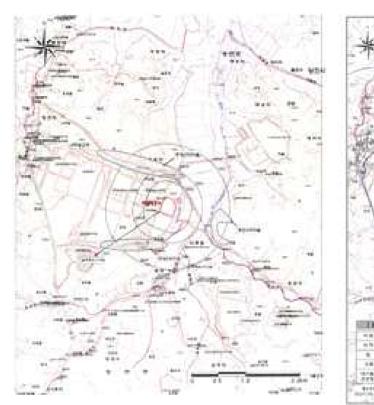
이 시장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 이 없도록 시가 해야 할 일은 빠지지 않고 점립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으로 보존 설명을 마셨다.

한편 오토뱅리산업폐기를 매립장 조성 반대비상대책위는 서신시청 앞에서 한 팽강을 뚫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정치세력에 최지 우지되고 있다고 비란. (가장) 비상대 책위원회 발족을 앞두는 등 지역주민 들 간 갈등이 예상된다.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 일 서신시정보리관통에서 기자회견을 얼고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 치세력이 주민들을 이용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오토멜리산업폐기를 메립장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성이 확보된 공사를 요구한다"고 주장됐다. 결관회·박계교기자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22

GET HAPPY! IT'S GOOD FOR YOU!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서산지역 생활폐기물의 현황 및 향후 대응

-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박상우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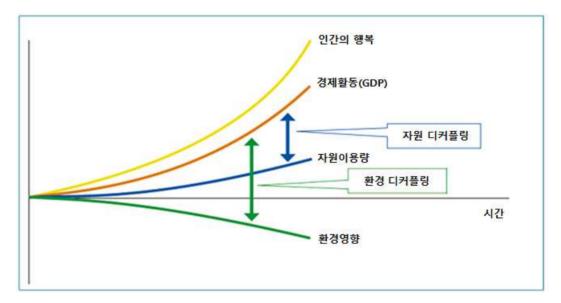
서산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 박상우 소장

Ⅰ.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내 대응

1.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디커플링)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자원이용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증가시키지 않기 위한 디커 플링(Decoupling)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



<그림 1> 경제성장(GDP)으로부터 자원 사용과 환경의 디커플링(Decoupling) 관계

앞으로 자원효율적 경제로 이행을 위해서는 선진국은 절대적 디커플링(사회 번영과 자원소비 절대량 감축을 동시에 달성), 개발도상국은 상대적 디커플링(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까지의 자원소비 증가는 허용하면서도 자원효율 향상)을 진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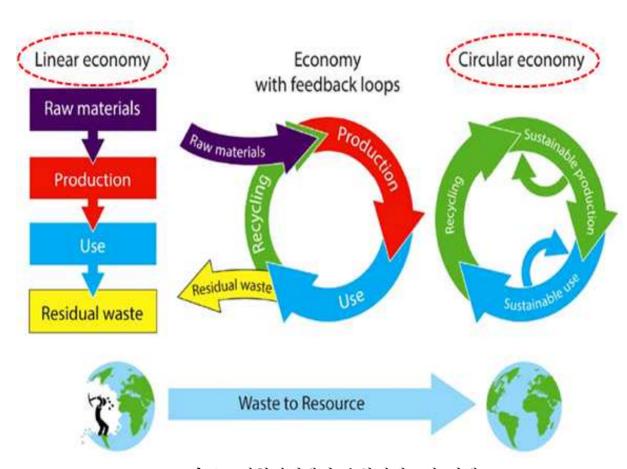
2. UN :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2015년 9월에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 다(SDGs)는 자원효율 향상을 통해 경제와 자원 소비·환경 영향의 디커플링은 경제, 인프라, 산업화, 지속가능한 소비

와 생산, 도시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는 17개 목표와 169개 타깃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원효율 또는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9개 목표와 17개 타깃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2030년을 위해 자원효율적 경제(Goal 8.4), 자원효율적 인프라(Goal 9.4)의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Goal 12.2 등)을 비롯한 자원효율 관련 목표가 합의되어 자원효율은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개도국도 포함한 글로벌 목표가 되고 있음.





<그림 2>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이행

3. 국내 대응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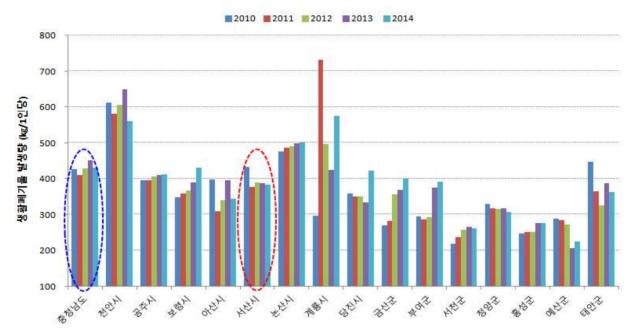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 2016년 5월 29일, 시행 : 2018년 1월 1일)

법률 조항	법률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ark>제</mark> 3조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u>발생을 최대한 억제할</u> 것 (Reduce) 2. 폐기물 발생이 예상 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u>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u> 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u>최대한 재사용</u> 할 것 (Reuse)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u>최대한 재생이용</u> 할 것 (Recycle) 다.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u>최대한 에너지회</u> 소를할 것 (Recovery)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u>적정하게 처분</u> 할 것 (Disposal)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u>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u> 되게 하여야한다.

▶ 기본원칙은 반드시 준수 : ①발생억제 ②재사용 ③재생이용 ④에너지회수 ⑤적정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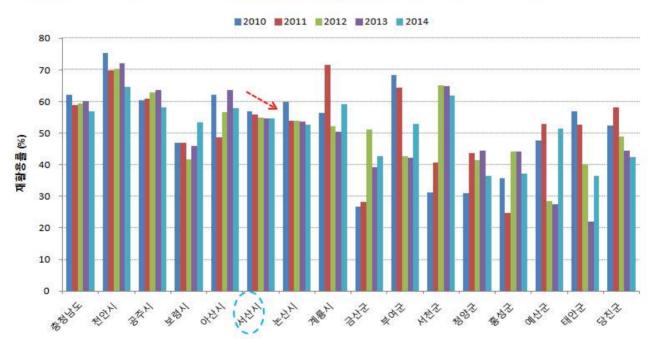
Ⅱ .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충남지역 중심으로

❖ 폐기물정책 우선순위 : ① 발생억제 ② 재사용 ③ 재생이용 ④ 에너지회수 ⑤ 적정처분



<그림 3> 충남지역 지자체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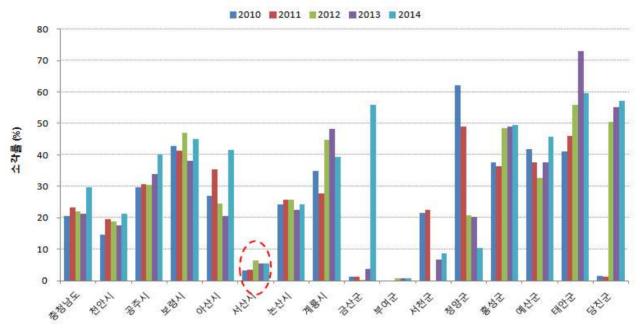
- 2014년 기준 발생량(kg/인당) : 한국 346.8, 충남 431.7, 서산 382.5
- ❖ 폐기물정책 우선순위 : ① 발생억제 ② 재사용 ③ 재생이용 ④ 에너지회수 ⑤ 적정처분



<그림 4> 충남지역 지자체별 폐기물 재활용률(%)

○ 2014년 기준 재활용률(%) : 한국 59.0, 충남 57.0, 서산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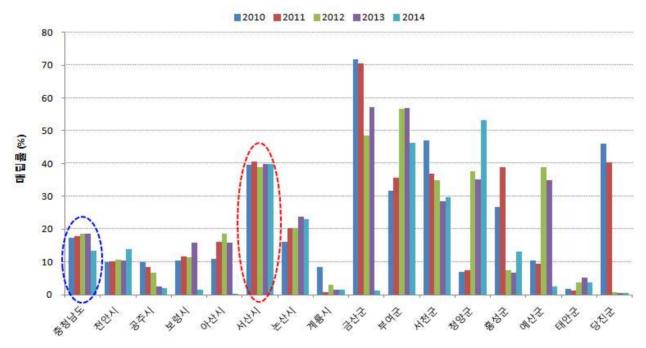
❖ 폐기물정책 우선순위 : ① 발생억제 ② 재사용 ③ 재생이용 ④ 에너지회수 ⑤ 적정처분



<그림 5> 충남지역 지자체별 폐기물 소각률(%)

○ 2014년 기준 소각률(%) : 한국 25.3, 충남 29.7, 서산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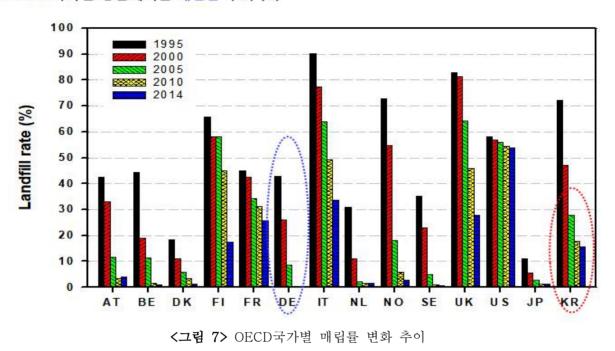
❖ 폐기물정책 우선순위 : ① 발생억제 ② 재사용 ③ 재생이용 ④ 에너지회수 ⑤ 적정처분



<그림 6> 충남지역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률(%)

○ 2014년 기준 매립률(%) : 한국 15.7, 충남 13.4, *서산 39.9*

➤ OECD국가별 생활폐기물 매립률 추이 (%)



- ▶ 매립률 1%대 국가: 벨기에(BE), 덴마크(DK), 네덜란드(NL), 스웨덴(SE), 일본(JP)이며, 독일(DE, 0 %)
- ▶ 반면 한국은 15.7%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에 의하면 2035년 기준 매립률 1% 목표)

Ⅲ. 충청남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2015년 기준)

1. 매립시설 현황

8	78	소재 지	총매립지면 적	중대립용량 (m)	기매립량(m) (2015년까지	찬여매립 가능량(m')	2015년	매립량	사용기간 (년-년)	설지비(박단원)			연간유지 관리비 인원(영)	매립후 이용계획		
시도	시군구		(#)	3160	전체 부적)	0.00000	(m)	(長)		A	국비	지방비	기타	(백만원)	7.500	
	소계	16 개소	691,511	7,544,561	4,147,260	3,397,301	151,596	108,889		206,671	47,141	159,330	200	79,538	58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용원1길 33-70	107,906	2,120,837	848,616	1,272,221	54,667	42,378	2003-2032	31,200	8,300	22,900		545	5	공원화
	공주시	검상동 산 7-4	45,250	787,260	499,211	288,049	2,850	2,591	1999-2031	11,483	3,445	8,038		374	2	녹지공원조성
	보령시	남곡동 산 127-1	61,261	739,056	682,269	56,787	9,580	9,580	1999-2021	19,025	4,756	14,269			3	공원화
	마산시	곡교천로 490	20,452_	207,095-	4414	202_981_	- 444	4,114	2015-2031	16,996	8,498	8,498		100	4	공원화
,	HAM	대산을 대즉리 715	32,057	182,129	182,129	0	0	0	2009-2012	1,891	567	1,324		1,100	3	안정화
	서산시	왕대11로 100	17,600	124,800	61,258	63,542	. 0	0	2012-2016-	10,967	1,464	9,503		409	6	안정화
	논산시	운진면 버들길 137	54,300	500,894	265,440	335,454	14,563	14,563	2002-2027	12,246	2,400	9,746		100	6	중원회
88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67	13,872	190,000	142,195	47,805	1,073	375	2000-2015	5,600	1,300	4,300		154	3	미상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499	125,526	683,887	443,087	240,800	-1,991	+1,593	2000-2026	31,729	3,000	28,729		407	8	28
	급산군	추부면 용천로 798-51	15,385	148,937	104,184	44,753	17,990	9,750	2007-2016	7,267	1,500	5,567	200	659	5	공원회
	부여군	세도면 수고리 611	51,713	539,100	287,131	251,969	16,666	8,333	1997-2029	6,237	2,245	3,992		196	4	안정화
	서천군	비인면 관리 547-1	37,498	292,400	197,445	94,955	19,323	10,170	1994-2040	10,200	1,500	8,700		440	3	미상
	청양군	청양을 충절로 1012-66	14,393	101,000	64,571	36,429	1,252	1,252	2004-2028	4,500	2,166	2,334			1	녹지조성
	홍성군	흥북면 중계리 525	49,469	338,498	269,485	69,013	1,189	847	1998-2016	14,898	3,000	11,898		74,934	1	공음조성
	예산군	대용면 차동로 1661-157	26,443	323,188	67,800	255,388	2,900	3,663	2004-2028	16,343	1,500	14,843			2	미상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354	18,376	165,480	28,325	137,155	7,420	2,865	2002-2020	6,189	1,500	4,689		120	2	7846 2567

※ 충남지역의 매립시설은 16개소이고, 이 가운데 서산지역은 2개소이나 2015년 기준 1개소는 매립종료(매립용량에 포화), 1개소 역시 *매립가능한 용량이 제한*적임

2. 소각시설 현황

	구분	소 재 지	시설용량 (론/일)	1일평균 가동시간	소리방식	문영방식	2015년 저리랑(톤)	설치비(백단원)			연간유지 관리비	공리인됨 (명)	가동계시일 (년.월.일)	
시도	사군구		10/8/	*10014			VIH 9(E)	24	국비	지방비	기타	(백만왕)	16/	12:0:07
	소계	11 개소	885	24			244,524	235,812	56,458	102,502	76,852	26,221	227	
	***	서복구 백석공단1로 97-45	200	24	화격자식	연속식	70,466	31,396	9,419	21,977	0	7,151	16	2001.11.11
	천만시	서복구 백석공단1로 97-45	200	24	화격자식	연속식	22,113	64,473	15,840	0	48,633	2,000	43	2015 09 15
	공주시	검상통 326	50	24	화자격식	연속식	15,418	8,800	0	0	8,800	1,834	18	2001.05.14
84	보령시	남곡동 1140-6	50	24	화격자식	연속식	18,658	12,143	3,642	2,430	6,071	611	18	2006.08.31
	마산시	배미로 154(배미동)	200	24	화격자식	연속식	65,493	79,912	17,957	61,955	0	3,890	50	2011.06.15.
	는산시	운진면 버물길 137	50	24	화격자식	연속식	16,639	10,548	3,000	0	7,548	2,869	14	2006.05.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67	25	24	화격자식	연속식	6,988	8,700	1,050	1,850	5,800	2,211	13	2006.08.14.
	서천군	비인면 관리 547-1	10	24	화격자식	준연속식	896	2,000	600	1,400	0	500	6	2003.09.27.
	청양군	청양읍 종절로 1012-66	15	24	화격자식	연속식	4,855	2,500	750	1,750	0	993	9	2004.02.04
84	예산군	대통면 자동료 1661-157	40	24	화격자식	연속식	12,778	10,129	3,000	7,129	0	2,362	25	2005.12.13,
	태안군	태안읍 삭선길 354	45	24	화격자식	연속식	10,220	5,211	1,200	4,011	0	1,800	15	2003.06.30.

※ 충남지역의 소각시설은 11개소임. 반면 서산지역은 *소각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Ⅳ. 정리 및 제언

※ 2014년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현황	한국	충남	서산	비고
발생	발생량(kg/인)	346.8	431.7	382.5	
	재활용률(%)	59.0	57.0	54.7	
처리	소각률(%)	25.3	29.7	5.5	소각시설 (×)
	매립률(%)	15.7	13.4	39.9	매립시설 (한계)

※ 제언: 서산지역 중심

- ▷ 폐기물 발생을 보다 더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책이 요구됨
- ▷ 그럼에도 발생되는 폐기물은 경제적·기술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사용 그리고 재생이용하기 위한 시책 마련이 요구됨

(자원순환기본법 제15조 : 광역시도의 자원순환목표 관리)

- ▷ 재사용이나 재생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에너지를 회수하고 매립을 최소화 하여야 함
- · 現 서산지역은 발생량 및 재활용률은 국가나 충남 대비 일정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나, 매립에 의한 비율은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 · 국가 폐기물통계 기반의 결과와 국내외 폐기물정책 동향을 고려하면 서산지역의 폐기물 매립률을 낮출 필요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 · 이를 위해 민·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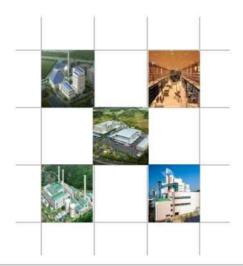
바이오 드라잉을 활용한 생활폐기물 활용방안

- ㈜웨스트 김태연 대표이사



Waste to Energy Using MBT

Brief Business Plan



Waste to Energy Process





보유기술



기계적 • 생물학적 처리(MBT)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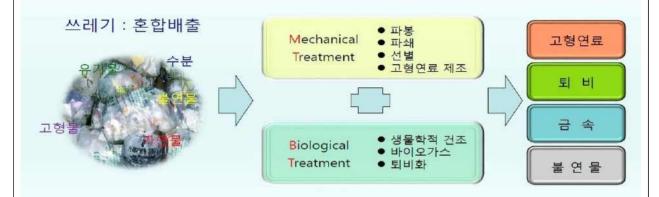
[대상] 그 동안 단순 소각・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을

[수단] 기계적 처리방법과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목표] 재활용 가치가 있는 물질을 선별하여 재활용함으로써

[목적] 환경 부하와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것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 전(前)처리



보유기술



공정의 목표

쓰레기는 여러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 성분별로 선별하면 자원이 된다. 수분이 많은 유기물을 선별, 열량이 높은 고형연료(RDF)를 생산한다.



- ▶ 복합기능의 반응기에서는 폐기물의 포장재인 비닐이 찢어지고, 유기물(음식물과 종이류)은 가루로 분쇄되어 쉽게 선별될 수 있게 되며, 미생물에 의한 발효열(60°C 전후)이 발생하여 페기물을 건조시킨다.
- ▶ 전처리된 쓰레기는 트롬멜(원통형 체)에서 유기물과 가연물로 고도 선별된다.
- ▶ 선별된 가연물은 고형연료 생산에 사용되며, 유기물은 재활용 목적에 맞게 부숙토(퇴비)를 생산하거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거나, 혹은 건조시켜 고형연료 생산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처리가 가능하다.

Biodrying MBT vs. Incineration



Common Ground

- √ Waste to Energy(WTE)
- ✓ Minimize Landf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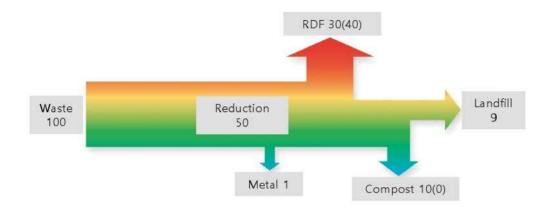
Difference

- ✓ Low Cost ↔ High Cost(Capex & Opex)
- ✓ Pollutants Low
 ↔ High
- ✓ Residents Soluble Good ↔ Resistance(NGO & Residents)
- \checkmark Storable and Transportable Energy \leftrightarrow Impossible
- ✓ Appropriate Technology (Stable) ↔ (Unstable)

FLOW SHEET Trommel Screen Magnetic Separator Wind Power Separator Grusher Magnetic Separator Wind Power Separator Wind Power Separator Magnetic Separator Magnetic Separator Steel Magnetic Separator Fuel Landfill Bio Rotary Drum Reactor

MASS BALANCE





※Note

- - Do not produce compost
 - Mixed compost in RDF
- > RDF Lower Heat Value : about more than 3,500 kcal/kg

< Major Bio Drying Technology Comparison



Process Features	Eco-deco	Future Fuels	Herhof	MBT
Bio dryer Type	- Bio Cubi windrows in enclosed hall - Downward air suctio n through matrix	- Rotary bio-dryer (RBD) with internal lift ers: - circular cylindrical drum inclined 7°	- Herhof-Rotteboxes Air and Liquid tight Boxes - Upward blowing of circulated dehydrated air through matrix	circular cylindrical drum inc ined 1.6°
Object	Not selected RMSW	- mechanically screening Organic among RMSW	RMSW 중 기계적으로 선별한 유기물	Not selected RMSW
Mechanical Pre-treatment	Shredding (200-300 ==)	- Breaking Bag, - 1 st shredding (80-120 mm)in aeration bay-Trommel Sorting(80 mm)80mm ‡	Hammermill < 200/150™	None
Operating Parameters	airflow rate	airflow rate, drum rotation, pH, heating/c ooling cycle, temperature	airflow rate 12 segments in bio- cell bottom	-airflow rate -Supply adjustment in the carrying compost
Residence time	12-15d	- aeration bay : 14-72h - rotary bio-dryer : 3d	5-10d	2-3 d

[&]quot;Biodrying for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of waste", Bioresource Technology (2009)

폐기물은 사업이 아니다

-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임정래

제목: 양대동 소각장 폐기물매매와 소각이 과연 적정한 사업일까?

페기물은 필요악으로서 발생량의 제로화와 백프로 재활용이 최종적 목표입니다. 현재 양대동 소각장은 이러한 면에서 적정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기물은 오염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절대로 지역간 사업의 대상이 되어 서는 안됩니다.

폐기물이 지역간 사업의 대상이 된다면 발생량 제로화의 백프로 재활용의 목표 는 경제적 이득 앞에 사라질 것입니다.

돈만 주면 해결할 수 있다면 아무도 폐기물제로화의 노력을 기하지 않을 것 이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도시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적정치 않으며 소각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냅니다.

폐기물은 제로화가 목표이고 그 방법중의 하나는 재활용입니다.

이미 서산시는 과거 RDF(REFUSE DERIVED FUEL)를 추진하였으나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나 민간사업자가 포기를 했다고 하여 광역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각대상 페기물의 양은 과거 큰 증가율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매립 또는 소각하는 생활폐기물은 발열량이 높은 플라스틱, 종이와 같은 가연성 폐기물이 많습니다.

<표 2-29> 생활폐기물 년도별 발생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음식물	계
2006년	53.8	22.2	80.0	37.0	193.0
2007년	68.2	27.5	77.6	37.0	210.3
2008년	68.9	20.2	45.8	45.4	180.3
2009년	68.4	20.3	48.7	45.2	182.6
2010년	64.3	19.0	65.6	44.7	193.6
2011년	58.3	17.0	48.9	45.8	170.0
2012년	65.9	14.4	48.6	48.7	177.6

주) 자료 : 환경부, 2006~2011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서산시 내부자료

<표 2-30> 년도별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현황

(단위 : 톤/일)

	Ť	⁷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Ngo.	후 계	193.0	210.3	180.3	182.6	193.6	170.0	177.6
		소 계	53.8	68.2	68.9	68.4	64.3	58.3	65.9
		음식물채소류	0.4	4.0	-			-	1.3
	가	종이류	17.5	22.6	22.6	24.2	22.5	20.0	19.8
35	연	나무류	6.1	8.9	11.4	10.6	9.6	9.1	13.6
	성	고무피혁류	3.3	6.1	1.0	2.1	2.1	1.9	3.4
제		플라스틱류	4.7	6.0	5.9	4.6	3.9	3.5	6.6
봉		기타	21.8	20.6	28.0	26.9	26.2	23.8	21.2
투		소 계	22.2	27.5	20.2	20.3	19.0	17.0	14.4
배	111	연탄재	2.2			1 58 8)	=	578,	=
출		유리류	<u> </u>	2.9	2.0	1.7	1.7	1.5	1.6
	선	금속초자류	2.5	2.9	4.3	3.9	3.2	2.9	2.8
	0	토사류	1.3	1.7	3.8	3.9	2.9	2.6	2.5
	**	7.5							
		소 계	80.0	77.6	45.8	48.7	65.6	48.9	48.6
		종이류	18.7	18.5	12.8	13.3	13.2	12.4	6.7
		병류	5.2	6.1	9.2	8.8	9.8	4.1	5.8
재		고철류	44.7	0.4	2.9	2.1	2.6	3.0	7.0
활		캔류	2.7	5.1	2.6	2.5	3.8	1.7	2.5
8		플라스틱류	1.5	9.2	8.3	7.2	11.8	1.8	3.3
가		합성수지류) 2 25	0.6	1.6	5.4	9.7	5.4	3.8
		전자제품	322	0.3		<u>28</u> 8	0.3	<u> </u>	2
		전지류	822	0.2	_8	22	0.1		
분		타이어	3	0.2	0.1	0.1	1	1	1
리		윤활유	9#	0.1		-	-	-	-
배		형광둥	84	8.8		-	0.1		-
출		의류		3.2	2.8	3.2	4.0	3.5	0.7
		영농폐기물	1988	4.8	5.4	0.5	2.5	-	9.4
		가구류	100	\$ = 6		5.4	1.5	1.6	53
			7.2	20.0	0.1	0.2	6.2	15.4	9.4
			37.0	37.0	45.4	45.2	44.7	45.8	48.7

주) 자료 : 환경부, 2006~2011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서산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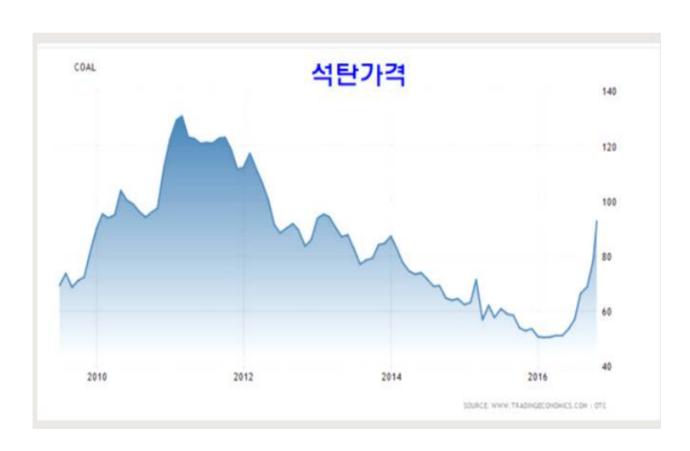
화석연료를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폐기물은 주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가공하여 RDF로 만들면 보관과 운반이 용이하고 사용시 제어가 쉽습니다. 서산인근에는 많은 대형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석탄을 주원료로 하고 RDF를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멘트공장, 제지공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거 이미 RDF시설추진시 연료로서 계약이 되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갈탄의 CO2 배출량은 0.15kg/MJ 이며 RDF는 0.08kg/MJ 정도로서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습니다.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미터 이동하였을 때 한 일이나 이에 필요한 에너지

현재 석탄가격은 중국의 부동산규제로 인하여 하락추세를 이어오다 다시 상승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발달은 지속적으로 석탄가격상승을 유인할 것이며 발전단가도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RDF는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20년전부터 RDF를 생산하여 수출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Mechanical Treatment 방식에서 Biological Treatment 를 혼합한 MBT(Mechanical Biologial Treatment)방식의 플랜트의 수출협약까지 한 상태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66456

서산시는 발표자료에서 2012년 본 협상결렬로 RDF시설을 취소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소각방식으로 바로 검토를 들어갔습니다.

왜 취소되었는지 다른 협상자는 없었는지 시행전에 RDF를 지속적으로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도표에 보이는 대로 많은 시가 RDF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자 선정 후 3년이란 기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St. s. WH.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생활폐기물연료화(RDF)시절 설치/사업 취소

'04 환경안정화시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고체연료화시설 포함)

- 2008년 민간투자 의향서 접수(한을이엠이)
- 2012년 본협상 결렬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 시설규모 90톤/일 → 민간사업자 205억원 총사업비
- 🎳 폐기물관리 까원순환 정책

자원순환형(Zero-Waste)사회정학 (유용자원 에너지 회수 활용)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보급률 확대
 2010년 2.98% → 2030년11%(폐기물·바이오 64.8%)
- ® RPS제도: '12년 2.0% → '22년 10.%
- 🎳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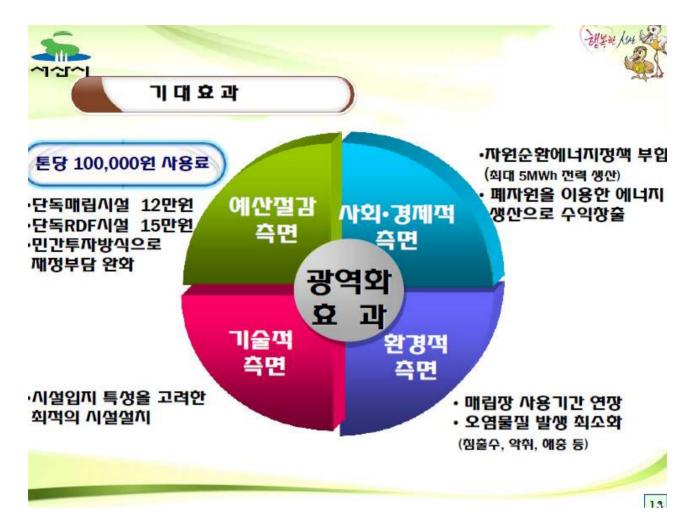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2011.12.14 전국65개중권역확정)

- 권역별 광역과 · 집쩍화 · 연계처리
- → 지역거점학로 "규모의 경제" 실현
- 온실가스 (CO₂) 배출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표. 생활폐기물 RDF 제조시설 현황

	지역	사업기간	용량 (톤/일)	연료 형태	사업비 (백만원)	시공사	사업추진 현황
4	수도권 07-10 200 펠렛 26,940 (주)태영		(주)태영건설	-가동 중			
П	내립지	10-13	1,200	fluff	150,000	_	-계획 중
경	부천	07-10	90	펠렛	16,500	대우건설	-가동 중
フ	가평	09-12	80	펠렛	17,824	휴먼텍코리아	-가동 중
-1	부안	07-11	25	펠렛	4,500	도건엔지니어링	-완공 단계
전 북	무주	09-13	80	펠렛	12,000	효성에바라 eng, 한라 OMS	-공사 중
강	원주 1차	08-12	80	펠렛	10,400	한화건설, 고려자동화	-가동 중
원	원주 2 차		80	펠렛		한화건설	-공사 중
	나주	09-13	130	펠렛	22,500	한라산업개발	-실시설계 완료
전 남	순천	09-13	220	펠렛	15,000	대선건설	-공사 중
	목포	09-12	230	펠렛	34,500	코오롱 건설	-완공 단계
	부산	09-13	900	fluff	80,00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공사 중
경 북	포항	09-13	500	fluff	45,000	포스코건설	-공사 중
경	남해	07-10	25	펠렛	5,000	바이오컨	-가동 중
남	김해	11-14	200				-신규사업 확정
충남	세종시	10-12	65	펠렛	22,000	태영건설, 한라산업개발	-시운전 중
	서산	11-14	90				-신규사업 확정
	광주	11-14	600				-기본설계 중
	대구 1· 구 내	11-14	760			RDF제조 경제성	-신규사업 확정 평가 최연선

출처: 국내 폐기물고형연료 제조산업 현황 및 RDF제조 경제성 평가 최연석



또한 서산시는 환경적 문제를 오로지 경제적 요인으로만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RDF사업시 톤당 150,000이 소요되니 톤당 100,000이 소요되는 소각방식을 택하여 한다는 논리입니다.

주민의 행복추구권, 건강권을 과연 톤당 50,000에 거래가 가능한지 그것도 타시의 폐기물을 대행 소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기 자료에서 RDF의 원가에 대해서는 적정한지 궁금증을 같습니다.

표에 의하면 원주시의 경우 운영비가 67,845원이며 인건비와 합산하면 139,316 이 소요되고 판매가격 톤당 25,000을 제외하면 순수한 비용은 128,640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반면 소각방식의 경우 오히려 비용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폐기물고형연료 제조산업 현황 및 RDF제조 경제성 평가 최연석)

표 7. 원주시 RDF 플랜트의 에너지 비용 (2011)

항 목	연간 총 비용 (원/년)	톤당 비용 (원/톤-MSW)
기름	629,691,231	48,456
고전압	250,242,143	19,257
저전압	1,728,800	133
계	881,662,174	67,845

표 폐열 미사용 소각로의 운영비

소각로	용량	건설비	운영비	(원/톤)	ਮੀ ਹ
조식도	(톤/일)	(백만원)	2009 년	2010 년	비고
과천	80	20,599	182,071	164,271	
수지	70	22,931	137,810	142,532	감가상각비 제외
산남	70	25,899	159,769	172,542	

출처: 국내 폐기물고형연료 제조산업 현황 및 RDF제조 경제성 평가 최연석

RDF 협상결렬후 나온 2013년 발행된 2012년 2021년 서산시 제 3 차 폐기물기본 계획에 의하면 서산시의 인구증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 것을 보았습니다

2017년 서산시의 인구는 174,000입니다 통계자료가 정확합니다

하지만 서산시는 인위적으로 2020년 인구수를 293,000명으로 하여폐기물발생량을 예측한 것을 보았습니다

산업폐기물장도 실제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강행을 하고 소각장도 그와 비슷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출처:서산시 제 3차 폐기물기본계획

<표 4-20> 서산시 장래인구추정 결과

년 도	통계적 모형 (최대·최소제외평균)	상위계획 (서산도시기본계획)	장래인구 추정치	भो ज
2014	169,885		169,885	
2015	171,750	91,900	91,900 263,650	
2016	173,625	3	265,525	
2017	175,510	3	267,410	
2018	177,405		269,305	
2019	179,311		271,211	
2020	181,228	111,500	292,728	
2021	183,155		294,655	

<표 4-19> 과거추세 연장법에 의한 인구예측

(단위: 인)

년 도	둥차급수법	둥비급수법	최소자숭법	지수함수	평 균	최대최소제외평균
2014	169,701	169,971	169,798	170,057	169,882	169,885
2015	171,266	171,826	171,674	172,077	171,710	171,750
2016	172,830	173,700	173,549	174,120	173,550	173,625
2017	174,394	175,595	175,425	176,188	175,400	175,510
2018	175,959	177,511	177,300	178,280	177,262	177,405
2019	177,523	179,447	179,176	180,398	179,136	179,311
2020	179,087	181,405	181,051	182,540	181,021	181,228
2021	180,651	183,384	182,927	184,708	182,917	183,155

출처:서산시 제 3차 폐기물기본계획

서산은 지금 서천 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대산 화학단지, 당진발전소, 당 진제철단지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시민이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인근에 휘발성유기화합물가스가 발생 하는 전국단위 규모의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대산 공단 또한 자일렌(크실렌)설비 등을 증설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성만의 논리로 타시의 폐기물마저 매입을 하여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과연 시가 우리시민의 행복한 주거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매우 의심 스럽습니다. 각 지자체장은 근본적으로 각 지역을 대변하고 각지역주민의 거주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처리 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우선되어 야 할 것은 주민의 건강과 거주권입니다.

그 무엇도 주민의 건강권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페기물은 필요악으로서 발생량의 제로화와 재활용이 최종적 목표입니다 페기물발생지역의 페기물을 타도시로 이관하고 페기물을 매매하는 행위는 근본 적으로 발생량 감소가 목표가 아니라 감량보다는 그를 통한 경제적 이득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의 목표는 시 페기물발생량 제로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며 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고발열량 폐기물의 매립을 금하고 MBT시설을 운영하여 물질순환원 칙에 입각한 모범적인 폐기물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소각장 결정 이전 이를 피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래는 서산시 폐기물기본계획의 3대원칙입니다.



출처:서산시 폐기물 기본 3차계획

- -종합적인가요?.
- -일관성이 잇고 환경목표와 부합되는 것인가요?
- -각종예측자료가 명확 했는가요?

서산시 폐기물(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보고서 문제점

- 서산시 최호웅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보고서 문제점

최 호 웅

- * 2013년 입지후보지 선정 기준 및 방법
- 가. 입지선정 기준
 - ① 대상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시켜 사업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지역
 - ②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 최소화를 통한 경제적인 건설과 자원순환 에너지 (스팀, 전기 등)를 생산 활용이 용이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 ③ 토지이용계획(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 ④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등
- * 2017년 입지후보지 선정 기준 및 방법
- 나. 입지배제 기준
 - ① 상수원보호구역
 - ② 생태계 보전지역
 - ③ 공원지역
 - ④ 문화재보호구역
- * 2013년과 2017년의 차이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양대동 813번지, 827번지, 828번지
 -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재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이하공란]
- * 양대동을 선정하기위해 억지 꿰맞추기
- ▶ ▶ 2013년 4월29일 공군20전투비행단 답변
- --가장 중요한 굴뚝 높이를 제한하며, 더하여 연막, 증기발생, 등불, 반사물체, 색채유리등이 있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회시했고, 건축 진행시 재협의 하라는 통보는 조건부 불허처분 결정임.

▶ ▶ 20전투비행단 답변요지(서산시청질의)

- --'20전투비행단의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고도제한 등 관련법저촉여부 검토결과통보에 의하면 제한고도 2후보지813번지 57미터 3후보지828번지 87미터 제한높이로답변 하였으나 부관에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그 구역의 표면높이(제한고도)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비행장해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 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을 금지 또는 제한합니다
- -- 관계 행정기관에서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건축협의 요청시 굴뚝높이 연막 증기의 발생량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시 재협의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음
- ▶군사보호법 제10조 제1항 5호

* 지장물현황(p110쪽)

♥ 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타당성조사

나) 지장물현황(2.7점)

구 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제3후보지	제4후보지
배 점		2.7	⁷ 점	3
점 수	1.9점	2.4점	2.7점	2.2점
	2(기옥) ×4+1(페가) ×1+1(폐축사) ×1+5(창	1(자류지)×1+1(유입배수관)×1+1(U형	1(수로) x2 + 1(오쒼達) x1= 3	3(U형 축구) ×2+1(외괵휀스) ×1= 7
조사내용	고) ×1+8(분묘) ×1+2(비닐하우스) ×1+4(전	축구) x2+1(외괵휀스) x1= 5		
(점수)	신주)×1+12(통신주)×1+			
	3(기로등) ×1+1(농수로) ×2= 46			
평가방식	 후보지내 지장물 수량 조사 후 가중치 : 송전탑(6), 도로,제명 부여하여 평가 후 점수가 낮을 *점수계산 : Σ 【가중치×지장함 *1위 : 2.7점, 2위 : 2.4점, 3위 	방(5), 가옥,건물(4), 과수(3), = 수록 높은 배점 물 수량]	를 무여하여 점수 산성 수로(2), 분묘·전신(통신)주·기	타(1)에 대하여 가중치를
검토방법	•도상작업 (수치지도) •현	장조사		
검토내용	가옥(2), 폐가(1), 폐축사(1), 창고(5), 묘지(8), 비닐하우스(2), 전신주(4), 통신주(12), 가로등(3), 콘크리트 농수로(1)	저류지(1), 유입배수관(1), U형측구(1), 외곽휀스(1)	수로(1), 오수맨홀(1) •사업부지 827번지와 828번지 사이의 수로로 연결 필요성 있음.	U형 축구(3), 외곽휀스(1)

110

- -1후보지: 가옥(2), 폐가(1), 폐축사(1), 창고(5), 묘지(8), 비닐하우수(2), 전신주(4), 통신주(12), 가로등(3), 콘크리트 농수로(1)
- -2후보지: 저류지(1), 유입배수관(1), U형측구(1), 외곽휀스(1)
- -3후보지: 수로(1), 오수맨홀(1),

사업부지 827번지와 828번지 사이의 수로로 연결 필요성 있음

-4후보지: U형 측구(3), 외곽헨스(1)

* 문제점

지장물이 많을수록 공사비가 많이 들어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됨에도 반대로 점수를 산정함.

- p113 간섭도로와의 접근거리
- p114 도로제원
- p116 재해발생가능성 및 집수구역 면적 검토
- p132 수계에 대한 영향
- p138 부지조성(시공성 용이)
- p139 진·출입도로개설
- p141 전력선 이격거리
- p143 토지보상비
- p144 공사비 등 상반됨

나) 진·출입도로개설(3.5점)

88 표 교	검토방법	평가방식	(거리,m)	전 	딸	
·총의로(간선도로)에서 지석로(소로 폭3.2m) 진출입도로(길이: 약1,000m, 도로폭:7.0m) 확장 필요	•도상작업(수치지도, 위성지도)	•간전노도에서 진입도로개설 필요 - 진·출입도로 개설에 따른 연 •1위 : 3.5점, 2위 : 3.2점, 3위		2.5		제1후보지
•양대11로(간선도로)에서 기존 폐기물 이용도로와 하수처리장 내 도로(도로폭:7.0m)를 이용함으로 별도 진출입도로 개설 불필요	• 토고량 산출	필요시 연장거리 평가 연장이 짧을수록 놓은 배점 3위 : 2.8점, 4위 : 2.5점	여	3.5	ω	제2후보지
•양대11로(간선도로)에서 부지 입구 구거횡단을 위한 폭 7.0m인 교량박스(약50m) 필요			Q‡ 50m	0,3 3.2	3.5점	제3후보지
대축산업도로(간선도로)에서 축엽로(소로 폭6m) 진출입도로(길이: 약400m, 도로폭: 7.0m) 확장 필요.			약 400m	2.8		제4후보지

139

ор Е Ш ол	표 야류 제 고	평가방식	소사내용 (거리,m)	- - - - - - - - - - - - - - - - - - -	H 전	HE		라)	
•총의로(간선도로)에서 지석로를 이용한 후보지까지 거리는 약1,000m이며, 진입로 주변으로 가옥이 인접하여 불편초래.	•도상작업(수치지도, 위성지도)	•후보지별 주변 간선도로까지의 연장가 - 간선도로에서 접근연장이 짧을수록 •1위 : 2.5점, 2위 : 2.3점, 3위 : 2.0	1,000m	2.0점		제1후보지	- 간선도로와 접근거리(2.5점)	주변도로현황과 접근성(5.1점)	
나무순환로(간선도로)에서 양대11로를 이용한 후보지까지 거리는 약 1,000m이며, 기존폐기물 매립장 이용도로 및 하수처리장 내 도로를 이용함으로 별도 진출입도로 개설 불필요.	• 현장조사	연장거리 평가 을수록 높은 배점 박 : 2.0점, 4위 : 1.8점	1,000m	2.0점	2.5점	- 別2亭보지			
•남부순환로(간선도로)에서 양대11로를 이용한 후보지까지 거리는 약 300m이며, 기존폐기물 매립장 이용도로를 이용함으로 별도 진출입도로 개설 불필요.		* ***	9º 300m	2.5점	5점	제3후보지			17. 일시우보
대축산업도로(간선도로)에서 축엽로를 이용한 후보지까지 거리는 약 800m이며, 진입로 주변으로 공장이 인접하여 있음.		აფ. ა	의 100m	2.3점		제4후보지			1V. 법시우모시 전정기준 및 최적후보지 전정

- 113
- * p113 주변도로현황과 접근성
- ▶1후보지와 2후보지의 거리는 1000m이나 1후보지의 경우 폭3.2m로 도로를 확장하여 야함에도 1후보지와 2후보지를 동일한 2.0으로 배점한 것은 잘못됨
- ▶3후보지의 경우 기존 폐기물 매립장 이용도로를 이용함으로 별도 진출입도로 개설 불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으나 후보지까지는 약 50m정도 신규개설을 해야되고, 5~6m의 수 로는 교량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
- p139 진출입도로가 약400m 확장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으나 p113에서는 800m로 표시되어있음

114			80 도 면 명	표 연 교		평가방식	(차로,m)	조사내용	ᅜ	모		
		•지석로를 이용한 후보지까지 1차선 도로이며, 도로폭은 약 3.2m로 조사되었음.		•도상작업(수치지도, 위성지도)	•1위 : 2.6점, 2위 : 2.3점, 3위	•후보지별 진입도로의 차로수 평가 - 차로수 및 폭이 클수록 높은 배	1		1.8점		제1후보지	- 도로제원(2.6점)
		•기존폐기물 매립장 이용도로 및 하수처리장 내 도로를 이용 중이며, 2차선 도로이며, 도로폭은 약 7.0m로 조사되었음.		• 현장조사	위 : 2.1점, 4위 : 1.8점	일수 평가 높은 배점	약7.0m	1	9 6절	2.	제2亭보지	
	# 10 11 (1 5 5 MM) 개 2	•기존폐기물 매립장 이용도로를 이용하며, 2차선 도로이며, 도로폭은 약 7.0m로 조사되었으나, 후보지까지 진출입을 위한					약7.0m	2.00	o 건	2.6점	제3후보지	
		•후보지까지 기존폐기물 매립장 및 주변 공장 이용도로를 이용 중이여, 1차선 도로이며, 도로폭은 약 4.0m로 조사되었음.	A distribution of the state of				약4.0m	2.1점	~		제4후보지	

*p114 도로제원

▶2후보지의 경우 도로폭이 7m로 별도 진출입도로개설 불필요하고, 3후보지의 경우 도로폭은 7m이나 약 50m의 교량박스개설이 필요함에도 2후보지와 3후보지를 동일한 2.6 점을 배점한 것은 잘못됨

ı	
The second secon	イゲム
	畑川岩
The second second	폐기물저리(
STATE STATE STATE	1-7
THE PERSON NAMED IN	:4)从(3
	NB PB
The second second	日といったいといると
The second second	ラエル
1	

116 -	(한 도 도 의	검토방법		평가방식		조사내용 (면적,㎡)	ᅜ	뜐	ᆔ	
	사이용 가지고 있으며 자해발생 가능성이 높음. •우수배제 유역면적 : 340,800㎡	•도상작업(수치지도, 위성지도)	•1위 : 1.7점, 2위 : 1.5점, 3위	적이 작을수록 배수	정사 원융 厨│││││││││││││││││││││││││││││││││││	340 , 800 m²	1.2점		제1후보지	- 재해발생가능성 및 집수구역 면적
	● 투보지 인근 하천(문당천 청지천, 도당천등)에 둘만 쌓인 입지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홍수범람의 가능성이 있음. •우수배제 유역면적 : 49,000㎡	• 현장조사(사진찰영)	: 1.4점, 4위 : 1.2점	규모 작으므로 높은 배달	기준으로 우수배제 유교며전	49,000 m²	1.4점	1.7점	제2후보지	북 검토(1.7점)
	후보지 인근 하천(둔당천, 청지천, 도당천등)에 둘러 쌓인 입지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홍수범람의 가능성이 있음. •우수배제 유역면적 : 39,748㎡			. Г.	사전	39,748 m²	1.5점	O 전	제3후보지	
	대사회학 메립장 및 후보지 인근 매립장 및 공장에 둘러 쌓인 완만한 분지 형태 입지 특성으로 재해발성 가능성이 낮음. 우수배제 유역면적 : 34,000㎡					34,000 m²	1.7점	- ž	제4후보지	

- *p116 재해발생가능성 및 집수구역 면적 검토
- ▶3후보지의 경우 827번지와 828번지 사이에 약 5~6m의 수로가 있어 재해의 위험성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않고 높은 배점을 한 것은 잘못됨

• 세대수 : 10	-300m -2세대 1세대 1세대 1세대 1세대 300m 1세대 1세대	검토방법 •도상작업 (수치지도, 위성지도) •현장조사	•간접영향권 내 세대수 조사간접영향권(300m)내 주거지역 세대수를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배점 순위 : 1위 : 3.7점, 2위 : 3.3점, 3위 : 3.	조사내용 (점수)	점 수 3.0점	또 전	구 분 제1후보지	- 간접영향권 반경내 세대수(3.7점)
N H 十 : 5	5-4 rl 300m	· 圣 / ·	작을수록 관한 법률 0점, 4위:	5세대	3.3점	3.7점	제2후보지	
• 세대수 : 0	300m		배점 령[별표2]지원혐의체 점	0세대	3.7점		제3후보지	
• 세대수 : 0	300m		구성방법(제18조1항 관련)	0세대	3.7점		和4亭보지	

p124 간접영향권 반경내 세대수

124

	용비포	Nº 00	표 유 교 고	평가방식	(거리, m)	조사내용	ᅶ	뜐	HŒ	
•최고농도 착지자점과 최인접마을과의 •원거리 순으로 유리 •환경영향평가 범위설정 가이드라인(개 2.5km)범위를 감안하여 세부기준 설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성과물	•시설 운영시 인접한 마을의 오 - 등농도 곡선 분포에 의한 최 •1위 : 4.5점, 2위 : 4.1점, 39		•최인접 주거지 이격거리	3.2		제1후보지	-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용이성
•최고농도 착지자점과 최인점마을과의 이격거리 평가 •원거리 순으로 유리 (저 그) ~ (ㅎ~) (제 그) ~ (ㅎ~) (제 그) ~ (ㅎ~) (제 그) ~ (ㅎ~) (제 그) 제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평가범위 설정기준인 5km(굴뚝기준 반경 2.5km)범위를 감안하여 세부기준 설정 (**) **이격거리는 마을 최외곽까지의 거리임			É	오염물질농도를 예측하여 확산 용이성 평가 최고농도 도착지점과 최인접 주거지 이격거리가 길수록 높은 배점 3위 : 3.6점, 4위 : 3.2절	: 245m	•최인접 주거지 이격거리	3.6	4	제2후보지	
제기물처리시설의 평가범위 설정			XXXXXX	이성 평가	: 330m	•최인접 주거지 이격거리	4.1	4.5	제3후보지	
생기준인 5km(굴뚝기준 반경					: 500m	•최인접 주거지 이격거리	4.5		제4후보지	

p134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용이성

-- 최고농도 착지지점은 각 후보지로부터 1.2~1.5km이므로 간접영향권을 300m로 설정 하여 배점한 것은 모순임

건			•해당후보지별 인근 거주자의 민원건수 (기준날짜 : 용역: - 입지후보지 타당성 용역기간 중 발생하는 민원건수가 ! •개인이 제기한 민원은 1건으로 간주하고, 집단이 제기한 민원은 1건으로 간주하고, 집단이 제기한 인데, 서면접수와 인터넷 접수는 동일하게 간주함) 평가방식 기인제기				
1건			사주자의 민원건수 (기준 용역기간 중 발생하는 은 1건으로 간주하고, 집 인터넷 접수는 동일하거 개인 이의제기	사주자의 민원건수 (기 용역기간 중 발생하는 일 1건으로 간주하고, 인터넷 접수는 동일하	사주자의 민원건수 (기 용역기간 중 발생하 일 1건으로 간주하고, 인터넷 접수는 동일하 개인 게임제기	사주자의 민원건수 (기용역기간 중 발생하는 일 1건으로 간주하고, 인터넷 접수는 동일하 개인 이외제기	사주자의 민원건수 (기용육기간 중 발생하는 일 1건으로 간주하고, 인터넷 접수는 동일하
1건	1	201	수 (기준날짜 : 용역착수일(발생하는 민원건수가 낮물수록 하고, 집단이 제기한 민원은 동일하게 간주함)	준날짜 : 용역착수일 는 민원건수가 낮을수 집단이 제기한 민원 하게 간주함)	29건 준날짜 : 용역착수을 는 민원건수가 낮을수 집단이 제기한 민원 가가 가장하	1.9 29건 1준날짜 : 용역착수을 는 민원건수가 낮을수 집단이 제기한 민원 하게 간주함)	1.9 29건 29건 는 민원건수가 낮을수 집단이 제기한 민원 하게 간주함)
2건	C C	3~50					
3건		6~901	전 민공람전위원회 개 6~9인	기	비 민공람전위원회 개 명 명 기 인원 제기 인원	제기 인원 6~9인	세기 인원 6~9인
4건	0) C	17 10 1001		전 일 (C)	원 (100 OLA)		

p125 민원발생 및 주민 호응성

▶1,2,3후보지는 29건 약236명으로 표기되었으나, 2016년 12월 8일 약11400명정도의 서산시민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누락한 것은 명백한 부실보고임

다) 주요문화재 소재여부(1.5점)

(원) 문 (교) (건)	면 연 교	평가방식	조사내용 (점수)	ᅜ		뉴
•인근주요문화재 현황 - 사적 : 1개, 유형문화재 : 5개 - 무형문화재 : 3개, 기념물 : 13개 - 문화재자료 : 7개, 등록문화재 : 2개 - 사광사 목조보살좌상	•도상작업 (수치지도, 위성지도)	• 후보지별 문화재 존재(여부 및 문 - 후보지별 인근 주요문화재(국가, • 배점 순위 : 1위 : 1.5점, 2위 : 1	0.79km	1.1점		제1후보지
•인근주요문화재 현황 - 사적 : 1개, 민속문화재 2개 - 유형문화재 : 5개, 기념물 6개 - 무형문화재 : 1개, 문화재자료 : 8개 - 등록문화재 : 1개 - 등록문화재 : 1개 - 송곡서원	•현장조사	문화재 존재(여부 및 문화재 보호구역 해당여부 인근 주요문화재(국가, 도지지정,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1위 : 1.5점, 2위 : 1.4점, 3위 : 1.2점, 4우 : 1.1점	4.5km	1.4점	1.5점	제2후보지
•인근주요문화재 현황 - 사적 : 1개, 민속문화재 : 2개 - 유형문화재 : 5개, 기념물 : 6개 - 무형문화재 : 1개, - 등록문화재 가료 : 8개 - 등록문화재 : 1개 - 등록문화재 : 1개 - 송곡서원		문화재 등)와의 이격거리가 멸수록 점	3.9km	1.2점	· 전	제3후보지
•인근주요문화재 현황 - 문화재자료 : 1개 •김적 및 김홍욱묘역			5.1km	1.5점		제4후보지

p128 주요문화재 소재여부 문화재는 0.7km~5.1km까지 적용하였으나 동식물은 1.5km로 적용함은 잘못됨

임 도 내 용	되 의 의 의 의	평가방식	조사내용 (점수)	ᅜ	배 점	뉴	
•지목은 전:당, 대지, 임야 등으로 21필지(39,616㎡)로 구성,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보천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저촉)등 구성 •서산시 칼산동 산28-2번지외 20필지 -라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도사따면:원(자촉) -다시면당원(자촉)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계획, 제한보호구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후 -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절차 •1위 : 3.6점, 2위 : 3.2점, 3위	①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설)결정 ②공원도시자연공원(협의) ③도로저촉(협의) ④준도전산지(산림청 협의) ⑤국유재산 사용협의(국유재산법)	2.5		제1후보지	
•지목은 잡종지로 1필지(49,000㎡)로 구성, 용도지역상 용도지역상 에기물처리시설지역 (100%)으로 구성 •시유지 1필지 구성 •시유지 1필지 구성 •시유지 2명대통 813 •「작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계획관리지역,폐기물처리시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비행안전6구역(전술),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 동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서산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사업), 하천구역	고도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해제	보지별 예상 인허가 절차 및 기타 및 협의 항목이 낮은 순으로 높 : 2.9점, 4위 : 2.5점	①비행안전구역 (혐의)	ය. ර	3.6	제2후보지	
•지목은 답으로 2필지(39,748㎡)로 구성, 용도지역상 농림지역(100%)으로 구성 •시유지 2필지 구성 •시유지 2필지 구성 •시우지 2필지 무성 •대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만리 법률 에 따른 지역·지우등 -논림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사람지구 등 -사람지구 등 -사람지구 등 -사람지구 등 -사람지구 등 -사람리지역 사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역·지구 등 사람보호구역(전술) 공:5km), 농업진흥구역	OIN	와 협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평가 또은 배점	例도시관리계획(順기물처리시설)결정 (인동업진흥지역(농림부 혐의) ③비행안전구역 (혐의)	2.9)점	제3후보지	
•지목은 전:달, 대지, 임야등으로 41필지(29,961㎡)로 구성,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전용공업지역, 폐기물처리시설로 구성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84~12번지의 40필지 막힌 번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도시지역, 전용공업지역폐기물처리시설(일부저촉-경미한 변경 절차 필요)			①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변경(경미한 변경) ②국유재산 사용혐의(국유재산법)	3.2		제4후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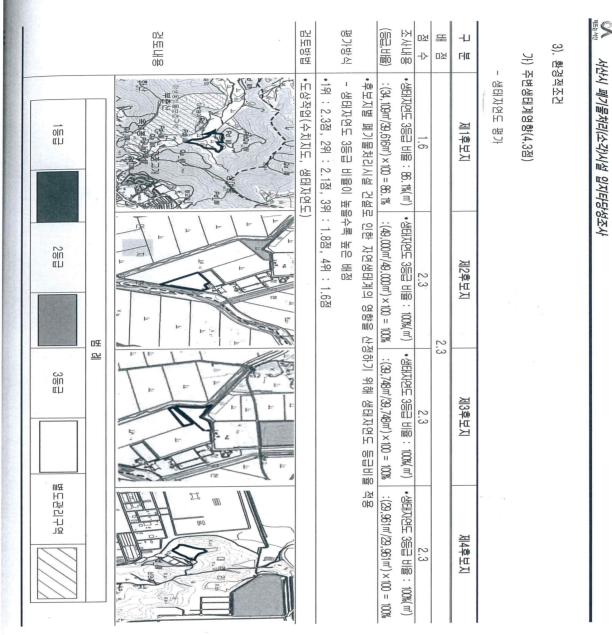
라) 법적 저촉여부 및 인허가(3.6점)

129

 \mathbf{g}

p129 법적 저촉여부 및 인허가

▶3후보지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은 제2후보지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이를 3후보지에 적용함



P130 생태자연도 평가

2후보지와 3후보지는 멸종위기 2급 삵과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둔당천과 두당천을 오가며 해미천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이격거리는 500m 이내이다 또한 천연기념물 199호 인 황새와 천연기념물 (205-2호) 70~100여개의 개체 천연기념물 (201-2호) 큰고니 200~300 개체가 열동하는 지역이다

2014년 4월 기준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문화재 청 지정31종, 멸종위기 1급 환경부 지정10종, 멸종위기 2급 환경부 지정 40종이 양대동 2후보지와 3후보지밑 천수만 일원에서 서식하는데 공업지역인 4후보지와 동일한 평가 및 배점을 한 것은 부실 및 허위평가라 판단됨

나) 수계에 대한 영향(5.0점)

					į	
바	제1후보지	足刀	제2후보지	제3후보지		제4후보지
또 应			5.0	0		
선 교전	4.5	57	3.5	4.0		5.0
소사내용 (거리, m)	•토사유출량 : 8.6309톤/일	8.6309톤/일	•토사유출랑 : 10.6726톤/일	•토사유출량 : 8.6559톤/일	·m	사유출량 : 6.5258톤/일
평가방신	•계획시설 공사시 수계 - 유하거리가 길수록	•계획시설 공사시 수계에 대한 영향평가 및 - 유하거리가 길수록 높은 배점	5향평가 및 계획시설 사고(유출시)	시) 해당수계의 상수원보호구역까지의		유하 이격거리 평가
0. 0. 1.	- 후보지 인근 상수 •1위 : 5.0점, 2위 :	후보지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이 위 : 5.0점, 2위 : 4.5점, 3위	원보호구역이 없으므로 주변 수계 유출토사량에 의한 평가 4.5점, 3위 : 4.0점, 4위 : 3.5점	흥왜 의한 평가		
모음 모	•도상작업(수치지도, 위성지도)		•현장조사	c e =		
	•후보지별 토사?	도사유출량 산출결과				
	HŒ - JJ	공사면적 (ha)	도사유출량 원단위 (㎡/ha·녀)	(개/로)	연수유출량	도사유출랑 (E/OI)
	19世人	3.9626	300		0.39900	8.6309
엄토내용	2후보지	4.9000	300	2.65	0.49340	10.6726
	39年以	3.9741	300	2.65	0.40016	8.6559
	4후보지	2.9961	300	2.65	0.30169	6.5258
	주) 1. 토사밀도는 2. 토사유출량	2.65톤/㎡ 원단위는	2.65톤/㎡ 적용(하수도 시설기준, 2011, 편원단위는 평균 300㎡/ha년을 적용	한국상하수도협회)		

132

p132 수계에 대한 영향 제2후보지와 제3후보지는 평지로서 토사유출량이 전무함에도 토사유출량을 산정한 것은 잘못됨

다) 대기질 영향/확산 용이성(8.5점)

- 대기오염물질의 예측농도

요 유 유	되 의 의 의	평가방식	조사내용 (가구수)	쩐	H 점	바
	•전략환경영향평가 성과물	•시일 논영시 인섭한 마을의 오염물질농도를 예측하여 주변 - 대기환경기준(PM-10 100/kg/㎡/24시간 기준) 초과 <u>가구수</u> -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가구가 없으므로 최고예측농도 •1위 : 4.0점, 2위 : 3.6점, 3위 : 3.2점, 4위 : 9.8절	1설 운영시 PM-10 예측결과 농도:0.001~0.047/48/㎡ 질 현황농도: 51.304/㎡ 농도(①升②):51.30~51.35/48/ 경기준:100/48/㎡/24시간] 영기준 초과 가구 없음	3.6		제1후보지
		오염물질농도를 예측하여 주변 대기질에 /㎡/24시간 기준) 초과 <u>가구수 평가하여</u> 가구가 없으므로 최고예측농도로 평가(조 3위 : 3.2점, 4위 : 2.8절		د د د ا		제2후보지
		계측하여 주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 호과 가구수 평가하여 적을수록 높은 배점 최고예측농도로 평가(최고예측농도가 높을수록 낮은 : 9 8점	4.0 •소각시설 운영시 PM-10 예측결과 ①기중농도:0.005-0.34946/㎡ ②환경질 현황농도: 41.746/㎡ ③예측농도(①米②):41.71~42.0546/㎡ [환경기준:10046/㎡/24시간] •대기환경기준 초과 기구 없음 •최고예측농도: 42.0546/㎡			제3층HT
			2.8 •소각사설 운영시 PM-10 예측결과 ①기중농도:0.003-0.015/4g/m² ②환경질 현황농도: 57.84/g/m² ③예측농도(())(2):57.80-57.82/4g/m² 〔환경기준:100/4g/m²/24시[간] •대기환경기준 초과 기구 없음		세4우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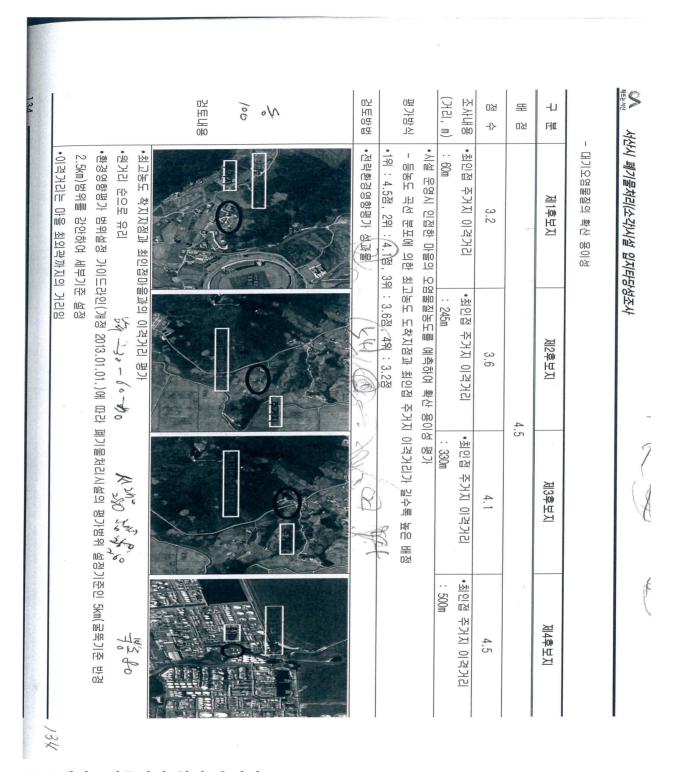
p133 대기오염물질의 예측농도

133

후보지별 오염물질 낙착지점의 방향이 동일하여야 하나 후보지별로 낙착지점이 상의함

용비되몬 되었다 편기방시 (거리, m) 조사내용 뚶 2) 사회적조건 ᇈ 가) 주거지역과의 거리, 세대수(7.7점) ・亭보지별 •도상작업 (수치지도, •배점 순위 : 1위 : 4.0점, 2위 : 3.6점, 3위 : 3.2점 -이격거리 조사 후 순위 주거지역과의 거리(4.0점) 이격거리 : 약 0.3㎞ 가장 인접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산출하여 멀수록 약 0.3km 제1후보지 위성지도) 이격거리 : 약 0.3㎞ •현장조사 약 0.3km 제2후보지 4위 : 2.8점 LIO HL 이격거리 : 약 0.6km 제3후보지 3.6점 0.6km IV. 입지후보지 선정기준 및 최적후보지 선정 이격거리 : 약 1.0km 제4후보지 123

p123은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제4후보지의 경우 약1km이며 3후보지는 약0.6km 2후보지는 0.3km로로 대기환경 기준 (pm-10 100ug/ ㎡/24시간기준) 초과 가구수 평가하여 적을수록 높은 배점을 적용하였으나 최고농도 착지 지점 거리의 세대수를 적용하여 세대수가 많을수록 낮은 배점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본보고서는 반대로 되어있어 순위결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



p134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용이성

1후보지는 동100, 2후보지는 남서230, 3후보지는 남서250, 4후보지는 북동 80에 최고농도 착지지점이 표시되어 있음

서산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를 적용하였기에 동일한 방향으로 낙착물이 표시되어 야함에도 각 후보지별 최고농도 착지방향이 다른 것은 부실보고서임을 증명하고 있음

마) 토양에 대한 영향(1.9점)

						엄토내용						표 6 H 고		평가방식		(王昭2031)	조사내용	ᅜ		HE T	
3. 토양오염도 : 각 물질별 ex) 1후보지 토양오염도			2	· · · · · · · · · · · · · · · · · · ·	4亭보지	3 申 上 八	2후보지	1 争	1	H -U	• [©]	•전략환경	<u>-</u> 1-	H 양 나	• • • • • • • • • • • • • •	: 0.0114	· · · · · · · · · · · · · ·				
	유 ()의 ()의		阳	요 요 맹 전	0.02	0.02	0.02	0.03	는 UR HE	三作	표 양 연 요	영영양평가	1.9점, 2	토양오염도가	엪	4	H H M	1.9		제1후보지	
		_	\ -\≻	型工工	60	60	60	60	는 KH	여	Ю	가 성과	2위 : 1	子 写 子	당부지의		세 타	9		보지	
유 0 요	NHO	TPH, TCI	<u>L</u> l0	 HTI	11.5	2.9	5.7	11.2	는 기가 기가 보기	十	문석결과		1.7점,	引来	년 유 연						
		TCE, PCE	6가크롬,	양오염우려기준(3지역을	2,000	2,000	2,000	2,000	유	김	户		3위 : 1	에 분 전	H H GR		· m				
03/60	토양오염우려기준		유기인	우려기원	0.5	0.83	1.57	3.03	는 IN IN IN IN IN IN IN IN IN IN IN IN IN	소旧			1.5점,		址	0.0055	유 원 요				
0 03/60 11 2/2000 3 03/200	려기준		유기인화합물,	≦(3⊼।≃	200	200	200	200	는 Kh	⊦≻			4위:				지 네 니	1.5		제2후보지	
2000	모				3.3	3.2	5.2	6.5	하 하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a.c.		1	1.3점				문석결과			ΙXΕ	
03/30	어 요 전 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Ш 10	700	700	700	700	KH KH	αĊ		¥0		3					_		
	場に		네이티의	<u>야</u>	16.5	10.9	19.1	42.3	는 한 한 대	오		i#				0.	· 师 900		1.9		
700 /	년 년 년 년		트		2,000	2,000	2,000	2,000	기전	아연						0.0032	유 어 요 대			丛	
) 3/9N	ਈ		. 스 (연,		11.3	3.1	5.4	7.9	는 자 대								문서결과	<u>၂</u> လ		제3후보지	
)n 7 o			트		500	500	500	500	시	UZE							户				
6 5/700 42 3/2000 7 9/500 10/80091			, (본 (본		0	0	0	10	마 의 의 의	UHI					-				_		
10/8000			등 신 애		800	800	800	800	다 K카	ŀ≻	~	5 3			- 1	: 0.0063	· 师 0 9 9				
보			년, 오틸뙨젠,		과 도 소	고 도 소 소	마 도 사	사 기 기	U\ FG FG	2		8				ස	양오염도 분석결과	1.7		제4후보지	
			텔, 크실렌,		0.0063	0.0032	0.0055	0.0114	H 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				ı			,	户				

p137 토양에 대한 영향

137

제4후보지의 경우 주변이 공단지역이고 수많은 양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오염농도가 높게 검출 될수있음에도 토양오염도가 낮은 것은 모순으로 볼수있음

	86 된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조사내용		나 ઋ	5) 공자
•산출근거 - 전·담 : 27,187㎡ - 임야 : 11,146㎡ - 대지 : 1,283㎡	•지목은 전·담, 대지, 임야 등으로 21필지(39,616㎡)로 구성,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보찬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저촉) 등으로 구성 •케인 21필지 구성 •토지이용현황: 전·담 68.7%, 임야 28.1%, 대지 3.2% 순	• 후보지 매입시 소요되는 토지평균가격 평가 - 평균가격 = ∑ [(공시지가 x 편입면적)/(총 편입면적 - 평균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배절 •1위 : 5.5점, 2위 : 5.0점, 3위 : 4.4점, 4위 : 3.9점 •도삼작업(수치지도, 위성지도) •자류조사(교시지가 등	•평균가격 = 1,423,462,400원 / 39,616㎡ = 35,932원/㎡	3.9점	제1후보지) 경제적조건 가) 토지보상비(5.5점)
•산출근거 - 잡종지 : 49,000㎡	•지목은 잡종지로 1필지(49,000㎡)로 구성, 용도지역상 폐기물처리시설지역 (100%)으로 구성 •시유지 1필지 구성 •토지이용현황: 잡종지 100%	토지평균가격 평가 지가 x 편입면적)/(총 편입면적)] 높은 배점 점, 3위 : 4.4점, 4위 : 3.9점 전, 3위 : 4.4점, 4위 : 3.9점	•평균가격 = 415,030,000원 / 49,000㎡ = 8,470원/㎡	5.5점	제2후보지	>>~>>
- 달 : 39,748.3㎡	•지목은 달으로 2필지(39,748㎡)로 구성, 용도지역상 농림지역(100%)으로 구성 •시유지 2필지 구성 •토지이용현황: 답 100% •산출근거		•평균가격 = 493,413,630원 / 39,748㎡ = 12,414원/㎡	5.0점	제3후보지	
•산출근거 - 전·담 : 24,536㎡ - 임야 : 4,284㎡ - 대지 : 687㎡ - 도로 : 474㎡	•지목은 전·답, 대지, 임야 등으로 41필지(29,961㎡)로 구성,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전용공업지역, 폐기물처리시설로 구성 •토지이용현황: 전·답 819%, 임야 14.2%, 대지 2.3%, 도로 1.6% 순	25 g	•평균가격 = 459,330,000원 / 29,961㎡ = 15,331원/㎡	4.4점	제4후보지	

p143 토지보상비

제2후보지의 경우 2017년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면적의 경우 49,000㎡이고 2015년 서산 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고에는 50,268㎡이며,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104,280㎡로 표기되어있음 이는 특정지역을 선정하기위하여 의도적으로 면적을 조정하였다고 의심됨

또한 제 2후보지 토지대장의 개별공시지가기준 2010년은 11,000원, 2012년은 6,930원, 2015년은 8,580원, 2016년은 8,470원이며 제3후보지인 828번지는 2010년 10,500원, 2012년은 11,000원, 2015년은 12,700원, 2016년은 12,414원으로 필요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조정하였다고 의심됨



나) 공사비(4.1점)

							용기괴도							B 유 유 유 유	평가방식		조사내용	상	뜐	뉴
·	88	となった	1				1.토목공사비				1.	OF.		•도상작업(수치지도, 위성지도)	- 기초 <u>공사비를 산정하여</u> • 1위 : 4.1점, 2위 : 3.7점	1 수 L 퍼디머의 •	•기초공사비 : 6	2.9		제1후보지
교	2) 신설거리부담금	1) 기본시설부담금	교		7) 철거공사	스타완표 (9	100	4) 우수관로	3) 말뚞공사	2) 진입도로	1				1를 산정하여 낮을수록 2위 : 3.7점, 3위 : 3		6,296백만원	. 9점		보 지
ı	ı	ı	I	직접비(40%)	1	1	1	l	PHC 400		1	과		1110	발도도+선덕 높은 배점 .3점, 4위 :		•기초공사비 : 4,240백만원	3.3점		제2후보지
6,295.9	4.3	23.8	6,267.8	1,790.8	61.0	0	747.0	481.0	180.0	2,830.0	178.0	1亭보지	.a.	, 전력선, 진입도로	선인입비용+기타). 2.9점		1.0		4.1점	X
4,239.6	17.2	23.8	4,198.6	1,199.6	0	0	1,340.0	168.0	460.0	0	1,031.0	2후보지		(I) (II) (II)	05		•기초공사비 : 3,724백	4.1점	oa:	제3후보지
3,724.1	4.3	23.8	3,696.0	1,056.0	0	644.0	700.0	300.0	487.0	1410	509.0	3후보지					3,724백만원	0천		보지
4,051.4	2.6	23.8	4,025.0	1,150.0	0	0	752.0	145.0	217.0	948.0	813.0	4亭보지					•기초공사비 : 4,051백만원	ъ. Э.		제4호
										2230,600		디프	(단위 : 백만원)			1	4,051백만원	3.7점	3	제4후보지

11111

p144 공사비

구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제3후보지	제4후보지			
배점	4.1점						
점수	2.9점	3.3점	4.1점	3.7점			
조사내용	기 초 공 사 비 :6.296백만원	기 초 공 사 비 :4.240백만원	기 초 공 사 비 :3.724백만원	기 초 공 사 비 :4.051백만원			

	공종명	규격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4후보지
	1)토 공		178.0	1.031.0	509.0	813.0
	2)진입도로		2.830.0	0	0	948.0
	3)말뚝공사	PHC 400	180.0	460.0	487.0	217.0
1.토목	4)우수관로		481.0	168.0	300.0	145.0
-	5)포장공사		747.0	1.340.0	700.0	752.0
공사비	6)교량박스		0	0	644.0	0
	7)철거공사		61.0	0	0	0
	8)재경비	직접비 (40%)	1.790.8	1.199.6	1.056.0	1.150.0
	합 계		6.267.8	4.198.6	3.696.0	4.025.0
전력선	1)기본시설 부담금		23.8	23.8	23.8	23.8
인입비 용	2)신설거리 부담금		4.3	17.2	4.3	2.6
=	총 계		6.295.9	4.239.6	3.724.1	4.051.4

구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제3후보지	제4후보지			
배점	4.1점						
점수	2.9점	3.3점	4.1점	3.7점			
ال ال ال ع	기초공사비	기초공사비	기초공사비	기초공사비			
조사내용	:6.296백만원	:4.240백만원	:3.724백만원	:4.051백만원			

	공종명	규격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4후보지
	1)토 공		178.0	1.031.0	509.0	813.0
			4493원	21040원	12805원	27135원
	2)진입도로		2.830.0	0	0	948.0
			2,830,000		50m신설	2,830,000
	3)말뚝공사	PHC 400	180.0	460.0	487.0	217.0
	4)우수관로		481.0	168.0	300.0	145.0
			12,141	3,428	7,547	4,839
1.토목	5)포장공사		747.0	1.340.0	700.0	752.0
공사비			18,856	27,346	17,610	25,099
	6)교량박스		0	0	644.0	0
	7)철거공사		61.0	0	0	0
	8)재경비	직접비 (40%)	1.790.8	1.199.6	1.056.0	1.150.0
	합계		6.267.8	4.198.6	3.696.0	4.025.0
	1)기본시설					
전력선	부담금		23.8	23.8	23.8	23.8
인입비용	2)신설거리 부담금		4.3	17.2	4.3	2.6
	총계		6.295.9	4.239.6	3.724.1	4.051.4
	*면 적		39,616 m²	49,000 m²	39,748 m²	29,961 m²

2017년 서산시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타당 조사 보고서 문제점

- 위법한 양대동 후보지를 최적후보지로 결정하기 위하여
 - ▶군사보호법 제10조 제1항 5호와 농지법 및 대기환경 보전법에 저촉됨 에도 최적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타당성 조사에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최적 후보지로 선정된 양대동 827, 828 번지는 천연기념물 문화재청 지정31종 및 멸종위기종 1급, 환경부 지정 10종, 멸종위기종 2급 환경부 지정 40종 등 생태환경적 가치가 매우높은 지역임에도 공업단지와 동일한 배점을 하였다.
- 특정 후보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민이 납득 할 수 없는 환경적 조건 기술적 조건 경제적 조건 법적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입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령에 규정된 서산시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한태 전문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법령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제,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일반폐기 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함으 로써 생활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정의한다. 가정쓰레기, 시장쓰레기 등이 여 기에 속한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소각·매립·해양투기 및 우주 공간에 버리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소각을 하여 그 양을 줄인후 재를 매립하는 방법이다. 생활폐기물의 특성상 소각장이나 매립지는 인구가밀집한 도시지역에 건설되므로 터 선정을 둘러싸고 님비증후군의 원인이 되어 공공갈등을 야기한다. 이런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법령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산시 조례인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 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7항 후단을 준 용한다.
- ⑩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
-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같은 법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제1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1.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2.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의하 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

- 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직접 영향권: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2. 간접 영향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와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주대책)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공개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사업계획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사업개시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후 보완·수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지원할 수 있다.

- 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간접영향권 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
- 2.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지원
- 3.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
- 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 5. 견학, 교육, 연수 등 지원
- 6. 마을단위 발전기금 및 지역단체 지원
- 7.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범위 안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방안

- 서산시 자원순환과 김기필 자원시설팀장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방안

Ⅱ 생활쓰레기 발생현황

(단위:톤/일)

년도별	계	일반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2015	169	72.5	9	43.5	44
2016	163	68	10	45	40
2017	165	70	10	45	40

Ⅱ 생활쓰레기 처리현황

O 처리방법

구 분	일반쓰레기 및	음식	재활용품	
1 正	대형폐기물	市자원화시설	위탁처리	<u> </u>
처리방법	일반소각 (위탁처리)	퇴비화	퇴비화 또는 사료화	선별 후 매각처리

O 처리량

(단위 : 톤/년)

년도별 계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류폐기물			
包工包	모릴 게 대형폐기물	계	市자원화시설	위탁처리	재활용품	
2015	56,683	42,800	12,728	5,323	7,405	1,155
2016	43,932	30,200	12,480	5,007	7,410	1,252

Ⅲ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현황

□ 환경종합타운(지붕형 매립시설) 현황

○ 준 공 일 : 2010. 05. 30.

O 사 업 비 : 5,500백만원

O 매립면적 : 17,600㎡(용량 124,800㎡)

○ 사용개시 : 2012. 9. 1.

○ 처리방법 : 가연성(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위탁소각(100톤/일)

○ 위 탁 사 : ㈜동양환경 외 4개사(2017. 3. 7. ~ 2017. 12. 20.)

O 위 탁 비 : 3.769백만원(27.173톤/년)



<환경종합타운 전경>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현황

O 위 치 : 양대11로 55-2(양대동)

O 시설용량 : 20톤/일

O 설 치 비 : 1,100백만원(국 330, 도 165, 시 605)

O 처리방법 : 퇴비화(호기성)

○ 최초운영 : 2001. 7. 1.

○ 운영방식 : 민간위탁(㈜한솔이엠이, 2017. 3. 1. ~ 2019. 2. 28.)

O 위 탁 비 : 960백만원(2017~2019년)

□ 재활용선별시설 운영현황

○ 준 공 일 : 2010. 05. 30.

O 사 업 비 : 5,128백만원

○ 면적·용량 : 2,395㎡, 30톤/일

O 선별방식: 수선별 + 철·금속, 플라스틱 자동선별

○ 주요시설 : 투입·공급시설, 선별·압축시설, 스티로폼 감용시설 등

○ 운영방식 : 민간위탁((주)유진유포리아, 2017. 5. 1. ~ 2019. 4. 30.)

O 위 탁 비 : 1,666백만원(2017~2019년도)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서산시 재활용선별시설

₩ 생활쓰레기 처리방안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O 사 업 명 :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서산시 양대동 827번지 외 1필지(39,748.3㎡)

O 내 용 : 서산-당진 권역 가연성 생활폐기물

O 규 모: 200톤/일 소각시설

O 기 간 : 2012년 ~ 2020년

O 사 업 비 : 약 700억원(국비+도비 55%, 민자 45%)

O 사업방식: BTO(수익형민간투자사업)

○ 필 요 성 : 서산·당진권역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광역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권역화, 대규모화를 통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효율성 기여.

O 향후계획

- 2017.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 및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 2017. 12. : 민간투자사업제안서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뢰

- 2018년 이후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 지정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O 사 업 명 :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서산시 양대동 812번지 일원(환경종합타운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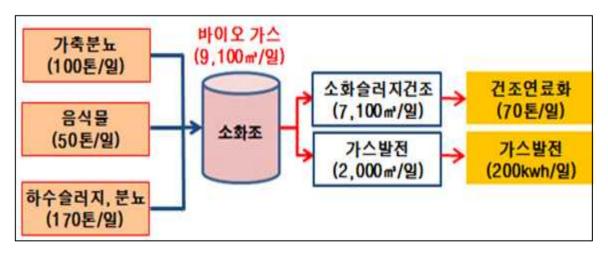
○ 총사업비 : 47,000백만원(국 70% 도 5% 시 25%)

O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 사업내용 : 바이오가스 9,100㎡/일 생산

○ 시설용량 : 바이오가스화시설 320㎡/일, 슬러지자원화시설 40㎡/일

O 처리대상 :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분뇨, 하수농축슬러지 통합처리



O 주요시설

- 반입 및 전처리시설, 혐기소화설비, 바이오가스이용설비, 악취제거설비, 폐수처리설비, 슬러지자원화시설 등
- O 시설배치 계획 : 서산시 양대동 812번지 일원



O 향후계획

- 2017. 11.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완료

- 2017. 12. : 우선시공분 착공

- 2017. 12. : 실시설계 승인 완료(한국환경공단)

- 2018. 1. : 본 공사 계약 및 공사추진(한국환경공단)

- 2020. 7. : 공사 준공